가입·탈퇴규정 규정 개정 예고문

가입 · 탈퇴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회규관리규정 제33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.

2026. 6. 29.

대한체육회장

가입·탈퇴규정 규정 개정 사전예고

1. 제정·개정·폐지 이유

ㅇ 인정단체 가입 및 등급심의 요건 현장의견 반영 및 현실화 필요

ㅇ 국제종합경기대회(올림픽대회 및 아시아경기대회) 신규 종목 가입 시, 회원단체 가입 및 승격 요건 일원화로 국가대표 선발·지원 및 경기력 제고와 단체 간 형평성 도모

ㅇ 무분별한 가입 신청 방지, 허위 자료 제출단체 등에 대한 제재 명문화

ㅇ 회원종목단체 승격·강등·제명 기준 등 명확화 및 보완으로 규정 내실화

ㅇ 자구 등 규정 명확화 및‘항’·‘호’의 순서 변경, 별지(양식) 정비 등

2. 주요내용

ㅇ【제3조제1항】인정단체 가입 및 등급심의 요건 일부 조정

- 각 시·도종목단체 주최 대회(1회 이상) → 가입 신청 안내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중앙종목단체 주최 전국규모대회(1회 이상)로 변경

· 시·도종목단체 주최대회는 소관 시·도체육회의 가입요건으로 정하고, 체육회 회원이 되고자하는 중앙종목단체의 전국규모대회 주최를 요건으로 하여 대표성 등 검증

ㅇ【제3조제3항, 제6조제2항】국제종합대회 신규 채택종목 가입·승격요건 일원화

- 국제종합경기대회 신규 종목단체의 준회원 가입요건을 인정단체 가입요건으로 일원화

· 차기 국제종합대회 정식종목에서 제외되더라도, 회원종목단체 지위를 지속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가입요건을 인정단체 가입요건과 동일시함

ㅇ【제4조제1항, 제6조제4항】가입 신청 시, 제출 자료 명확화

- 제출 자료들의 용어 정비를 통해 정관, 경기인 등록규정 등 관련 규정과의 체계 일치

○ 【제6조제1항】 인정단체의 준회원 승격 기본 조건 명확화
- 제3조제3항에 따라 준회원으로 가입한 종목단체의 인정단체 상태에서의 승격 조건 명시, 기존 인정단체가 올림픽대회 또는 아시아경기대회 종목으로 채택되는 경우에 대한 승격 심의 특례 명확화

○ 【제6조제2항】 시·도체육회에 가입된 시·도종목단체 수 조건 조정
- 인정단체의 준회원단체 승격 요건 중 시·도체육회 준회원 등급 이상 시·도종목단체 기준을 과반수 방식에서 5개 이상 고정 기준으로 변경
  → (기존) 시도체육회 가입 시도종목단체 수: 9개 이상(과반수가 준회원 등급 이상)
  → (개정) 시도체육회 가입 시도종목단체 수: 9개 이상(5개 이상이 준회원 등급 이상)

○ 【제7조】 강등과 제명기준 분리하여 규정 명확화
- 체육회로부터 제명 또는 자진탈퇴 시, 해당 종목의 회원 재가입 제한기한(3년)을 규정화하고, 예외조항도 함께 신설하여 조정 장치 마련
- 종목단체 강등 또는 제명 심의 시, 해당 단체에 소명 기회 부여 신설

○ 【제4조제4항~제8항, 제5조제3항, 제6조제7항~제10항 신설】 허위자료 제출 등에 따른 신청 무효, 철회 및 제재 조치 등 근거 마련
- 가입·등급·승격 등 종목단체 심의 시, 허위자료 및 자료 조작 등의 행위로 원활한 심의업무를 방해한 종목단체에 대한 제재조치 마련

○ 신설·개정 규정 적용 부칙 조항 신설
- 가입 심의, 승격 심의, 인정단체의 제명, 제명 또는 탈퇴 단체의 규정 적용 일자 규정화

○ 기타 조항 순서 및 자구 수정, 용어 정비, 별지(양식) 현행화 등

3. 의견제출

- 가입 · 탈퇴규정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한체육회 법무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의견제출사항

(1)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/이유

(2) 성명, 주소, 전화번호, 이메일주소

나. 의견 제출할 곳

대한체육회 법무팀 이메일 주소: law@sports.or.kr

다. 의견제출방법: 이메일

붙임 1. 가입 · 탈퇴규정 개정(안) 1부.

2. 신 · 구조문대비표 1부. 끝.